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4.(수)

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4. 조선일보는 「162조 미래기금, 정부가 셀프 운용·셀프 감시」 기사에서,

○ “민간위원 구성 권한을 기획예산처 장관의 재량에 일임해 장관이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.” “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공적 기금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의 금융·회계 자격이나 경력, 외부 기관 추천 등 요건을 법률에 목 박아 둔 것과 대조적이다.”라며,

○ “기금의 씀씀이를 감시할 최고 의결기구마저 정부 입맛대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은 예산안 및 다른 기금과 동일하게 **국가재정법과 국회법상 통제와 규율**에 따르고 있습니다.

○ 기금 전체는 물론 개별사업 지출규모까지 포함한 **기금운용계획안**을 국회에 제출하고, **국회의 사전 심의·의결**을 거쳐 **확정·운용**되기 때문에 **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.**

○ 아울러, 미래대응기금은 **초과세수를 적립·활용**할 경우 그 변경내역을 **국회에 지체없이 보고**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기금에 비해 **강화된 사후통제 장치**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기금운용심의회 **민간위원의 자격요건**과 관련한 **입법례**는 **다양**합니다.
다수 기금*의 경우 **국가재정법 입법체계**에 따라 **민간위원의 자격요건**을 **대통령령에 위임**하고 있습니다.

* 예: 기후대응기금, 공급망안정화기금, 소상공인진흥기금, 금융안정기금 등
(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내부 운영규정에서 규정)

□ 미래대응기금법도 **일반법**인 **국가재정법 제74조**(기금운용심의회)의 **입법 취지**와 **체계**를 **충실하게 반영**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국가재정법은 ①항기금운용심의회의 **설치**, ②항**심의사항**, ③항심의회의 **구성**(위원장, 민간위원 비중) 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"**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**"은 **대통령령**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국가재정법에서 **법률**로써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래대응기금법에서 보다 **구체화**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**민간위원**의 **자격요건**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**대통령령**에서 **구체적으로 규정**할 예정입니다.

□ 미래대응기금은 청년, 성장동력, 지방, 교육·인재 등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투자를 병행하는 **복합성 기금**으로, 국민연금기금·신용보증기금 등 **자산운용·신용보증** 등 **고도의 금융업무**를 중심으로 하는 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
○ 전문자격, 해당 분야 근무경력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다양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와 시각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미래대응기금은 투자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**전문가**는 물론 **유관기관·단체 관계자**도 **균형있게 참여**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래대응기금과 관련된 **각계각층의 의견**을 **충실히 수렴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아울러, **여유자금 운용**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(제76조)에 따라 별도의 **자산운용위원회**를 설치하고, **자산운용 분야 전문가**를 위촉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	단 장	박성훈 (044-214-2360)
		담당자	서기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